

決訟立案과 소송 현장, 그리고 노비의 삶

김 경 숙 *

1. 머리말
2. 1707년 구례현 기상전답 소송
 - 1) 소송 현장과 推卜
 - 2) 노비 신분과 '小地主'
3. 1722년 안동부 전답 소송
 - 1) 이전 소송과 不應訟
 - 2) 노비 신분과 '奴主'
4. 맷음말: 노비, 신분, 그리고 조선 사회

1. 머리말

소송은 일상적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위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국가의 법적 영역으로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적인 일상적 공간에 그치지 않고 양자가 만나는 접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의 규범이 일상에 적용되는 실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가의 규범 속에서 개인의 일상이 어떤 입장과 주장을 표출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곧 당대적 조건 속에서 고민하고 대립하고 때로는 결충하고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영역이라 하겠다.¹⁾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오늘날 민사 소송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제한한다. 조선시대의 詞訟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決訟立案은 이러한 소송의 특성을 그대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판결문뿐만 아니라 소송의 시작에서 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 전개된 원고와 피고의 진술, 증인들의 증언, 증거문서의 내용들이 모두 실려 있다. 때문에 소송의 전말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 양측의 주장과 근거, 소송관의 판결과 근거까지 파악할 수 있다.²⁾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결송입안 중 1707년 구례현 소송과³⁾ 1722년 안동부 소송을⁴⁾ 검토하고자 한다. 이 두 소송은 노비의 記上[己上] 전답을 둘러싸고 전개된 소송이다. 기상은 노주가 노비 己物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경국대전』의 ‘공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노비와 田宅을 소속 관청, 고을에 귀속하고, 사노비는 그 재산을 아울러 本主가 구처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⁵⁾ 이는 조선시대 노비의 신분적 예속성을 보여주는 법제적 장치로 주목되어 선행 연구들이 상당수 축적되어 있다.⁶⁾

본고에서 이 소송에 주목하는 점은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는 소송 현장에서 소송당사자들의 詛卞과 소송관의 판결 근거이다. 자녀 없이 사망한 노비의 재산을 두고 발생하는 소송 현장에서 노주, 노비 방계후손, 매득자 등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복잡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소송 현장에서 원고와 피고로서 대등한 법적 주체로 대결하여 법규정과 증거 위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소송관 또한 법규정과 증거 검증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신분제 사회에서 신

2) 김경숙, 2018 「조선시대 決訟立案과 여성의 소송 주체성」 『한국사론』 64 참조

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고문서집성 37: 구례 문화유씨편 I』, 立案 3(<http://archive.aks.ac.kr>).

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고문서집성 6: 의성김씨 천상각파편 II』, 立案 17(<http://archive.aks.ac.kr>).

5) 『경국대전』 형전, 공천조.

6) 전형택, 1990 「조선후기 노비의 토지 소유: 기상전답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1; 이정수, 2006 「16세기 노비의 기상전답과 성격」 『역사와 경계』 59; 김경숙, 2009 「조선시대 노비의 기물과 기상」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 태학사; 김경숙, 2009 「소송을 통해본 조선후기 노비의 기상저항」 『역사학연구』 36; 이해정, 2017 「노비의 기상행위와 쟁송: 뮤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87.

분이 작동하지 않는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는 소송 문서 속에 드러나는 노비의 실제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비는 살아서는 상전에게 노동력이나 신공을 납부하고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자녀 없이 사망하였을 때는 노주가 記上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비의 신분적 예속성을 대표하는 특성들로 노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비의 실제 삶의 모습은 예속적인 신분으로서의 노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상전과의 관계에서는 노비 신분이었지만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는 신분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지를 성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1707년 구례현 기상전답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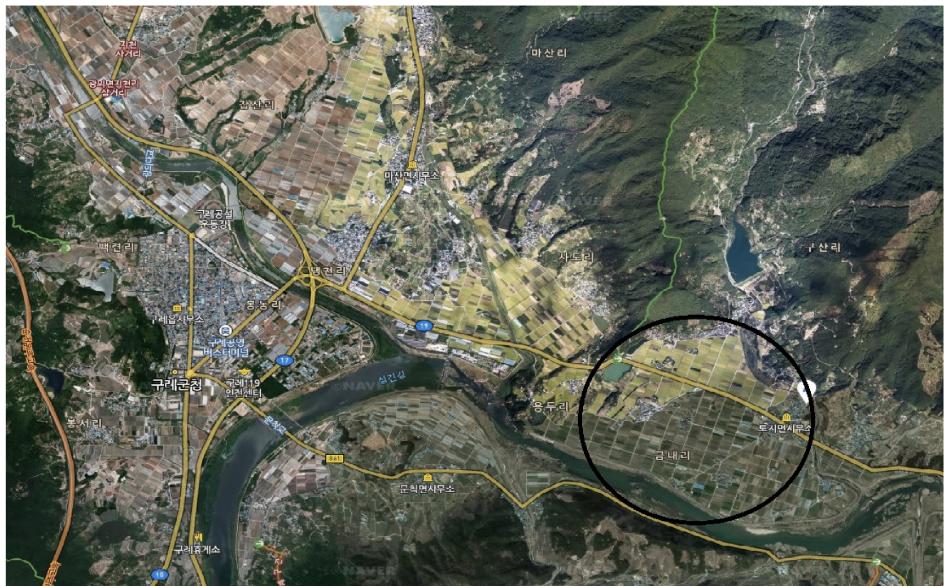
1) 소송 현장과 推下

본 소송은 전라도 구례현에서 1706년 11월~1707년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개된 전답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순천 사는 姜仁信, 피고[隻]는 구례 사는 정수영, 소송관은 구례 현감이다. 所爭物은 구례현 吐旨面 九萬坪에 있는 菜字畝 69복 5속이다. 이는 용인 사는 양반 尹生員[尹性任]의 노비로 살다가 죽은 鄭應清(아명 鄭應昌)이 남긴 己物이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872년 지방지도의 구례현 지도를 보면, 토지면의 구만리 앞에 구만평이 표시되어 있어 소쟁답의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위성사진으로 볼 때도, 구례 읍내에서 하동으로 가는 길목의 섬진강을 끼고 있는 넓은 평야지대로 무척 좋은 지리적인 입지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1872년 지방지도, 구례현(<http://e-kyujanggak.snu.ac.kr>)



〈그림 2〉 네이버 지도 구례군(<https://map.naver.com>)

① 소송 제기

소송의 발단은 1706년 11월에 순천 사는 姜仁信이 구례 현감에게 다음과 같이 소지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저의 장인 裴孟男이 생전에 구례현 토지면 구만리 산정원에 있는 채자답 13두락 지를 지지난 경진년(1640, 숙종 26)에 정응창에게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었습니다. 신축년(1661, 현종 2)에 정응창의 동성 조카 鄭之訓이라는 자가 그의 삼촌 정응창이 상전에게 己上했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탈취하여 갈아먹었습니다. 그때 장인은 한창 중병으로 방문을 드나들지 못하여 이 논을 추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詳問하니 기상에 入錄되지 않아서 정응창의 동성 조카 鄭時泰와 鄭水永 등이 자손 없는 삼촌 응창의 전답이라 하고 관에서 재주가 되어 반분하여 갈아먹었습니다. 執耕人 정시태와 정수영 등을 관의 권위로 잡아와 推卞 하신 뒤에, 장인이 매득한 문기 를 현납하니 상고하여 추심해 갈아먹도록 처분해 주십시오.”⁷⁾

이 소지 내용에 의하면, 분쟁지는 장인신의 장인 배맹남이 정응청에게서 매득하였는데, 정수영의 부친 정지훈이 기상답이라고 주장하면서 탈취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들으니 해당 전답이 기상에 포함되지 않고 방계 후손인 정시태와 정수영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 부당함을 호소하며 時執者인 정시태와 정수영에게서 해당 논을 추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推卞: 원고와 척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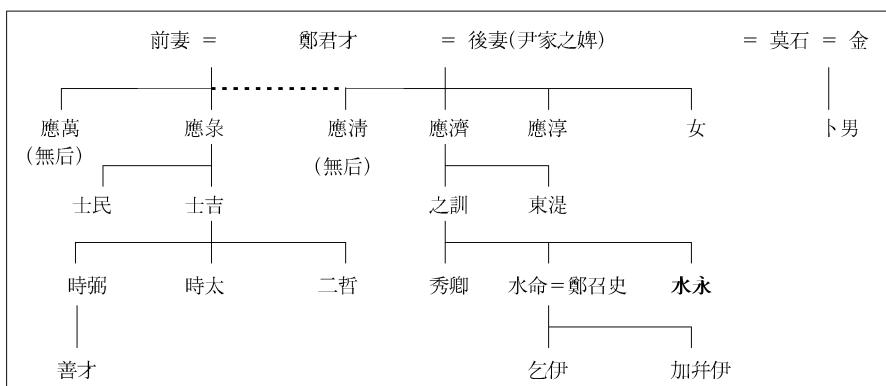
장인신의 소지가 相訟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구례관은 장인신에게 정수영을 데려 올 것을 처분하였다.⁸⁾ 이에 따라 장인신은 정수영과 함께 구례관에 출두하였

7)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고문서집성 37: 구례 문화유씨편 I』, 立案 3, 393면[한국학진흥 사업단 토대연구지원사업, 2018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2차년도 연차보고 자료집),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2-19행]. 이하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으로 약칭함.

8) 결송입안에는 이 과정이 ‘정수영을 捉來’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당대의 소송 진행 절차 및 다른 소송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구례관에서 직접 정수영을 착래한 것은 아니고, 강인신의 소지에 ‘정시태와 정수영을 착래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장인신은 이에 근거하여 정수영과 함께 官庭에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1706년 11월 21일 원고 강인신(63)과 척 정수영(40)이 “저희들이 논을 가지고 相訟하는 일로 오늘 소송을 시작합니다. 갑을 중 30일이 차도록 송정에 나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결해 주십시오”라는 始訟傍音을 함으로써 소송이 개시되었다.⁹⁾

〈표 1〉 피고 정수영 가계도¹⁰⁾



시송다짐한 그 날 진행된 1차 推卞에서 원고와 척은 각자 소쟁답에 대한 권리와 상대방의 違端을 주장하였다. 원고 강인신은 1661년 횡탈당하고 수십 년이 지난 1706년에 이르러서야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해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첫째는 장인이 괴질로 사지를 놀리지 못하여 문밖출입을 하지 못하다가 순천으로 移居한 지 4~5년 만에 병사한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둘째는 해당 토지가 기상답인 것으로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탐문해 보니 정시태와 정수영이 자손 없는 할아버지의 기물이라 하여 관에서 재주가 되어 반분 경작하고 있는 것은 無據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응창 상전가에 기상한 것처럼 꾸며 털취한 후에 정시태와 정수영이 반씩 나눈 것이 분명하며, 해당 토지가 기상답이 아니라면 매득자인 장인의 토지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¹¹⁾

9)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21-26행.

10)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앞의 책, 立案 2-5, 8(1705, 1707, 1708, 1714, 1719년 결송입안)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한편, 원고 강인신은 배맹남의 사위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그의 가계는 파악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정수영은 부친 정지훈이 기상 전답을 還買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비였던 정응청이 자녀 없이 사망하자 1655년(율미, 효종 6)에 용인 사는 그의 상전 윤생원이 와서 '給己官主之法'에 따라 응청의 전민을 기상하여 차지하였다. 그 후 1666년(병오)에 정지훈이 윤생원의 배자에 따라 값을 주고 매득하여 다년간 갈아먹었다는 것이다.¹²⁾

이와 함께 그는 법리적인 측면을 들어 강인신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즉, 배맹 남이 매득했다는 1640년(경진)은 지금부터 68년 전으로 이미 大限이 지났고, 탈취당하였다는 1661년(신축)은 47년 전으로 小限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고 추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聽訟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聽理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¹³⁾

또한 기상이 아니라 '官作財主'하여 정시태와 반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6촌 정시태 형제가 都文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관작재주를 하지 않고 승소하였음을 주장하였다.¹⁴⁾

③ 可考文書: 증거 제출 및 증거력 검증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 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양측에서 제출한 가고문서이다.

〈원고 강인신의 가고문서〉¹⁵⁾

- 燒火立案 1장(所志, 招辭, 立案 粘連文書)
 - 1671년 12월 강인신이 순천부에 제출한 所志
 - 강인신(27), 都將 박홍걸, 권농 노 한문, 거린 박풍남 招辭
 - 불에 탄 것이 확실함을 공증하는 立案
- 後錄 : 병오년(1606) 정응창에게 매득한 문기 및 본문기 3장

11)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28-57행.

12)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62-69행.

13)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72-79행.

14)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113-123행.

15)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126-179행.

경진년(1640) 정응창에게 매득한 문기 및 본문기 2장
 병신년(1656) 김응수에게 매득한 문기 및 본문기 3장
 기해년(1659) 박경선에게 매득한 문기 및 본문기 2장
 갑자년(1684) 입안 : 구례현 계사리면 독자동 内 황자 가경전답

원고가 제출한 가고문서는 소지와 초사가 점련된 소화입안 1장이었다. 이에 의하면, 1671년 12월 강인신이 집에 불이 나서 기물과 문서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이유로 순천부에 공증을 요청하였고, 순천부에서는 면임, 겨린 등의 초사를 받은 후에 불에 탄 것이 확실함을 입증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입안의 말미에는 불에 탄 문기 목록이 후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본 소송의 소쟁답인 경진년(1640) 정응창에게 매득한 문기 및 본문기 2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의 가고문서에 대하여 쳐 정수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증거력을 부인하였다. 하나는, 원고의 유일한 가고 문서는 付火立案 1장뿐인데, 입안 내용 중 ‘本文記 二丈’의 ‘二’字에 한 획을 추가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유일한 증거문서에 변조 흔적이 있다면서 증거 문서로서 채택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¹⁶⁾ 또한 응청은 부유한 사람의 아들로 해당 논은 世傳祖業이었기 때문에 원재주가 처분할 때는 都文記 1장만 있었으니 본문기 3장이 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응청은 형제가 많고 한 마을에서 相率同居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생전에 문전옥답을 자손 외의 사람에게 방매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¹⁷⁾

〈최 정수영의 가고문서〉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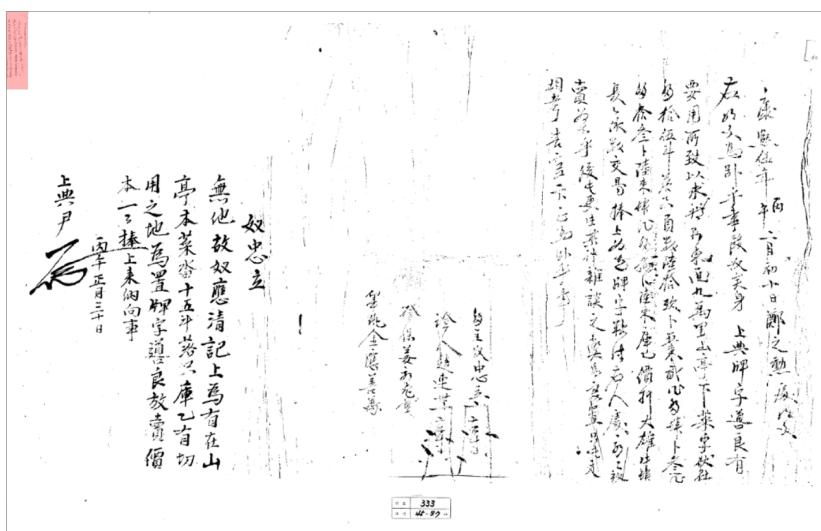
- 明文 1장, 牌字 2장, 所志 3장, 捧招記 1장
- 배자 ①과 명문 : 1666년(병오) 윤생원이 노 충립에게 준 위임장과 충립이 정지훈에게 전답을 방매한 매매명문
- 배자 ② : 1698(무인) 11월 29일 윤생원이 鄭水命에게 준 배자
- 소지 ① : 1698년(무인, 숙종 24) 12월 13일 鄭壽明이 구례현에 올린 소지
- 소지 ② : 1699년(기묘) 1월 20일 鄭壽明이 신임 구례 현감에게 올린 소지
- 소지 ③ : 1701년(신사) 7월 25일 軍官 鄭壽明이 구례현에 올린 소지
- 捧招記 : 용인 윤생원(尹聖任)의 봉초기

16)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85-89행.

17)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97-105행.

18)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182-365행.

정수영이 제시한 가고 문서는 7장에 달하였다. 먼저 1666년 배자 ①과 명문은 부친 정지훈이 윤생원에게 기상답을 환매한 매매문서이다. 1666년에 상전 윤이 노 충립에게 기상답 채자답 15마지기를 방매할 것을 위임하는 배자와 노 충립이 상전의 배자에 따라 鄭之訓에게 해당 전답을 방매하는 명문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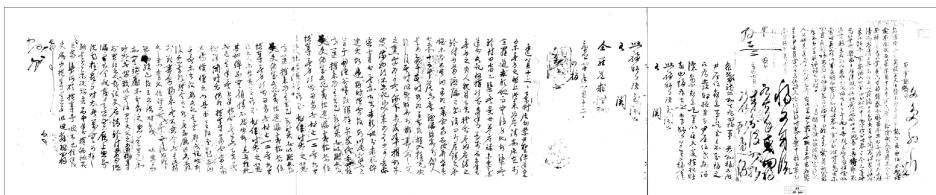
<그림 3> 1666년 정지훈 토지매매명문(출처: <http://archive.aks.ac.kr>)

나머지는 이전에 정사민-정시태와 해당 전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소송 문서이다. 1698년 윤생원이 정수명에게 준 배자는 응청의 조카 士民이 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작재주할 상황에서 직접 구례에 내려가 기상전답임을 확인한 상황을 기록하고, 길이 멀어 왕래가 쉽지 않으므로 훗날의 분쟁을 대비하여 배자를 써준다는 내용이다. 문서 말미에 기상받은 전답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소지 ①은 1698년 정수영의 형 정수명이 구례현에 올린 소지로 정시태의 기송으로 관작재주할 상황에서 윤생원이 내려와 해결하고 작성해준 배자 ②에 대하여 입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구례관에서는 “자손 없는 노비 전답을 상전

19) 이 문서는 구례 문화류씨가에 현존하고 있는데, 결송입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송입안에 실려있는 문서들이 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지하는 것은 마땅하다. 윤생원이 친히 와서 구별하였으니 뒷날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호소한 바에 따라 後考次 立旨함”이라는 題辭를 내렸다. 소지 ②는 1699년(기묘) 1월 20일에 鄭壽明이 새로 부임한 구례 현감에게 올린 소지로 배자 ②와 소지 ①에 근거하여 정사민·정시태가 時執하고 있는 소쟁답을推給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지 ③은 1701년(신사) 7월 25일 軍官 鄭壽明이 구례현에 올린 소지로 기상답을 정시태가 奪耕한 상황을 호소하며 윤생원에게 진위를 移文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의 捧招記는 정수명의 요청으로 구례관에서 용인관에 移文하여 윤생원을 차례할 것을 요청하자 용인 현령이 윤성임(당시 나이 65)이 늙고 병들어 起送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윤성임의 진술을 받아 점련하여 회이한 문서이다. 봉초기에서 윤성임은 자손없는 노비 기물은 紿己官主之法이 國典에 실려 있어 족속들이 나누어 먹는 법은 없음을 근거로 들며 응청 뜻의 전답이 은루되었다가 지금 드러나도 이는 상전이 범대로 추심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시태가 가져갈 길은 없음을 강조하였다.²⁰⁾



〈그림 4〉 정수명 소지, 용인관 회이 및 윤생원 봉초기 점련문서

(출처: <http://archive.aks.ac.kr>)

④ 소송관의 決訟과 근거

1707년(정해) 1월 13일 원고와 척이 “저희들이 논을 서로 소송하였거니와 관

20) 이 문서 또한 결송입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원문서가 현존하고 있다(〈그림 4〉). 원문서를 보면, 정수명의 소지와 용인관에 移文한다는 구례관의 題辭, 용인관의 回移[關文]와 윤생원의 봉초기가 차례로 점련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결송입안에 등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식에 따라 처결해 주십시오”라는 決訟傍音으로 소송은 판결 단계에 접어들었다.²¹⁾ 소송관인 구례 현감은 판결을 내리면서 가고문서에 대한 검증과 법리적인 측면을 결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가고문서의 증거력에 대해서는 원고 강인신의 부화입안을 違格 처리하였다. 애초에 처부 배맹남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가 추후에 矾書한 흔적이 분명하고 필적이 같지 않으며, 또한 간간이 협서하고 改書한 것을 지적하며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았다.²²⁾ 반면 척 정수영의 가고문서에 대해서는 배자에 따라 매득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고 문서상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²³⁾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원고측에 대해서는 ‘장인이 살아있을 때 매득한 논이라면 한 지역 내에 살면서 어찌 執持耕食하지 못하고 타인이 들어가게 하여 방매하는 일이 있게 했는가?’라고²⁴⁾ 하여 오랜 세월동안 時執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이는 척 정수영이 제기하였던 大限과 小限이 모두 지났다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같이 소송관인 구례 현감은 가고문서의 증거력과 법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척 정수영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쟁답인 토지면 구만평 채자답 69복 5속을 정수영에게決給하였다.

이상의 소송 현장을 살펴볼 때, 소송의 진행 과정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가고문서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소송관의 판결 또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한 가고문서에 근거한 법리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원고는 순천 사는 63세의 강인신, 척은 구례 사는 40세의 정수영이라는 거주지, 성명, 나이 정도 밖에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추변 과정에서 강인신은 배맹남의 사위이며, 정수영은 노비 정응청의 방계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소송 현장에서 이들은 원고와 척이라는 동등한 법적 주체로서 존재하였으며,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소송 상대자의 신분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21)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365-369행.

22)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372-375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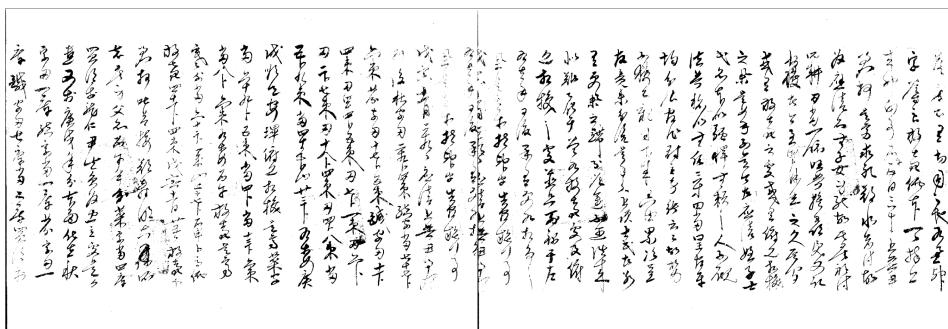
23)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380-384행.

24)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376-379행.

2) 노비 신분과 '小地主'

본 소송은 자녀 없이 사망한 노비 정응청이 남긴 기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방계 후손과 향촌민이 경쟁한 장이었다.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본 소송 이전에도 이미 본 소쟁답을 대상으로 정수영과 정시태의 소송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정응청의 방계 후손들 간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본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정시태와의 소송은 본 소송이 끝난 이듬해 1708년에 다시 재발한다. 정수영이 본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근거하여 당시 時執者인 정시태에게 해당 전답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²⁵⁾

이를 통해보면, 노비 정응청의 기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들은 기상 받은 노주를 비롯하여 방계 후손들, 향촌민들까지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경쟁에 뛰어들도록 한 노비 정응청의 기물 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그림 5〉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중 '1698년 윤생원이 정수명에게 준 牌字' 부분

(출처: <http://archive.aks.ac.kr>)

본 소송에서 척 정수영이 제출한 가고문서 가운데 정응청의 기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698년 윤생원이 정수명에게 준 牌字이다 (〈그림 5〉).²⁶⁾ 응청의 조카 士民이 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작재주할 상황에서

25)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37: 구례 문화유씨편』, 입안 4, 1708년 구례현 입안.

26)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218-228행.

직접 구례에 내려가 기상전답임을 확인한 상황을 기록하고, 길이 멀어 왕래가 쉽지 않으므로 훗날의 분쟁을 대비하여 배자를 써준다는 내용이다. 문서 말미의 後錄에서 기상받아 처분한 전답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⁷⁾

〈표 2〉 노 응청 기물의 기상 내역

字號	田	畠	비고 ²⁸⁾
秋字	29복 4속		
結字		77복 6속	
芥字	17복 5속		
鹹字	11복 4속, 44복 5속, 6복, 2복 7속, 18복 4속, 4복 8속	5복 9속 45복 내 23복	1670년(庚戌) 순천 사는 安璵과 相換
菜字		69복 5속, 4속, 13복 6속, 8복 6속	1666년(丙午) 방매
寒字		62복 1속 내 27복	1656년(丙申) 卜馬 값으로 방매
		41복 4속	1698년(戊寅) 11월 25일 방매
합계	1결 41복 8속	2결 70복 6속	
총계		4결 12복 4속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응청이 상전 윤생원에게 기상한 기물의 규모는 논 2결 70복 6속, 밭 1결 41복 8속으로 총 4결 12복 4속에 달한다. 위치상으로도 17필지에 달하고 양안의 字號로 6자호에 걸쳐있는 방대한 양이다.

그의 기상 규모를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의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자. 18세기 후반 대구에서 구례 오미동으로 이거한 문화유씨 柳爾宙가 토지를 집적한 결과 1793년에 자녀들에게 分給한 규모가 논 34석 9두 5합, 밭 9석 14두에 달하였다.

27) 이 문서는 결송입안에 등재된 내용만 남아있고 원문서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존하는 원문서인 〈그림 3〉과 〈그림 4〉가 결송입안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결송입안에 등재된 牌字의 내용 또한 원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8) 윤생원이 기상받은 후에 해당 기상전답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내역임.

이후 100여 년이 지난 후, 이 집안의 후손인 柳瑩業이 1911년에 소유지로 신고한 전답 규모는 두락으로 97두 3승 3합, 正結로는 4결 36부 1속이었다. 이 집안의 토지 규모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面內 ‘소지주’의 농업 경영으로 위치짓고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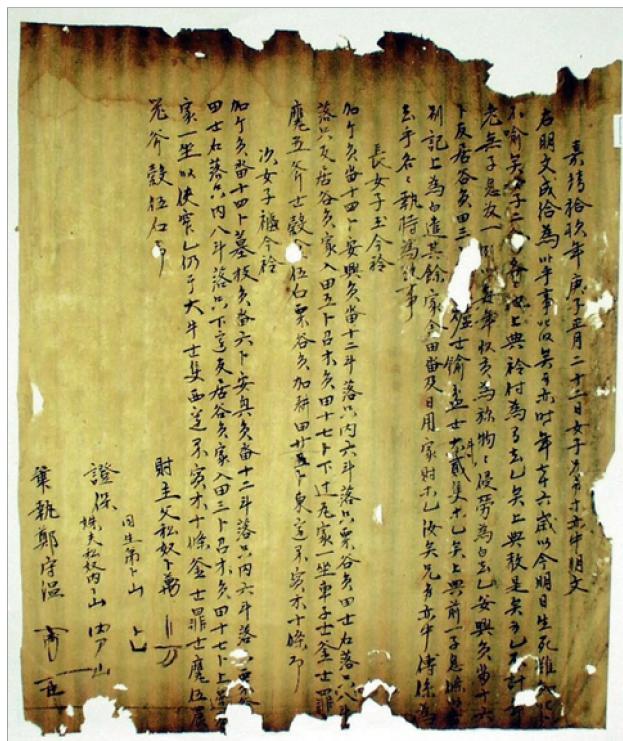
이와 비교해 볼 때, 정응청의 기상 규모는 오미동의 문화유씨가와 비슷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11년 유형업이 신고한 전답 규모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기상 규모로 확인되는 정응청의 전답 소유는 면내 ‘소지주’의 경영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여기에서 확인되는 기상 외에도 정응청이 생전에 區處한 기물 및 기상할 때 노비측에서 은루시킨 부분들이 있을 것임을 고려할 때, 그가 실제 소유했던 토지는 이보다 훨씬 대규모였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노비 정응청은 구례현 토지면 내의 ‘소지주’로서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정응청처럼 조선시대 노비가 상당량의 경제력을 보유한 것은 특수한 사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력이 탄탄한 노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1540년(중종 35)에 사노 卜萬이 자신의 재산을 두 딸에게 分財하면서 상전에게도 자녀 한 사람의 뜶을 기상한 혀급명문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³⁰⁾

이 문서에 의하면 노 복만은 상전에게 畔 16복, 田 3복을 기상하고, 장녀 옥금에게는 畔 14복 및 6두락지, 田 42복 및 8두락지와 와가 1坐 등을, 차녀 복금에게는 畔 20복 및 6두락지, 田 20복 및 8두락지와 와가 1좌 등을 분급하였다. 이를 합하면 노 복만의 기물은 畔 50복 및 12두락지, 田 65복 및 16두락지 등으로 총 전답 1결 15복 및 28두락지, 瓦家 2坐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9) 이종범, 1995 「20세기초 自營(小)地主의 농업경영과 농민생활」 『학림』 16 참조.

30) 이정수 · 김희호, 2006 『조선시대 노비와 토지소유방식』, 경북대출판부, 154-155면.



〈그림 6〉 1540년 사노 복만의 허여명문³¹⁾

1720년대 경자양안을 통해서도 노비의 경제력을 추측할 수 있다. 경상도 용궁현의 경우 1결 이상 5결 미만을 소유한 田主의 신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천민의 경우 각 면단위로 1~10명, 7개 면을 통틀어 24명이 확인된다. 1개면에 평균 3명 내외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정응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노비들이 면내에서 수명 정도씩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토지 소유 규모상으로 볼 때 상층 자작농에서 ‘소지주’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천민에 해당하였지만 경제력에 있어서는 부농 또는 소지주의 상태였다.

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고문서집성 41: 안동 주촌 전성이씨가』(<http://archive.aks.ac.kr>).

〈표 3〉 경자양안의 賤民 田主

[표 4] 1결이상 5結미만을 소유한 전주의 신분 (단위:結-負-束)

	南 下		內 上		北 上		北 下	
	田主	面積	田主	面積	田主	面積	田主	面積
兩班	43	85-66-6	19	33-71-9	49	95-04-7	71	125-67-8
中人	2	5-08-0	14	21-69-5	9	12-99-6	10	15-11-1
平民	33	48-12-6	30	38-22-5	19	29-14-0	16	22-61-5
賤民	5	7-57-4	4	5-35-9	2	3-07-4	2	2-73-4
其他	4	6-43-8	1	1-52-9	4	5-21-1	4	6-54-5
合計	87	152-88-4	68	100-52-7	83	145-46-8	103	172-68-3
	申 上		申 下		邑 內		合 計	
	田主	面積	田主	面積	田主	面積	田主	面積
兩班	26	43-19-4	14	23-90-7	32	66-22-9	254	473-44-0
中人	5	7-77-4	8	14-93-6	31	49-55-7	79	127-14-9
平民	38	49-09-7	23	33-97-2	9	11-99-9	168	233-17-4
賤民			10	14-56-4	1	1-79-8	24	35-10-3
其他			3	5-73-6	5	14-52-9	21	39-98-8
合計	69	100-06-5	58	93-11-5	78	144-11-2	546	908-85-4

* 비고 : 其他는 馬位田과 같은 국유지, 書院田과 같은 공동소유지, 寺刹 소유지 등임. 이하 동.

(출처: 김건태, 2000 「17-18세기 전답 소유규모의 영세화와 양반층의 대응」『한국사학보』 9)

이 같은 상황을 당대인들은 “응청이 많지 않은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을에서 살면서 상속받은 田民이 많아 饒富居生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³²⁾ 이는 일상에서의 삶의 형태를 묘사한 것으로 노비 신분으로서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정응청과 같은 경제력이 탄탄한 노비들은 상전과의 관계에서는 신분적 예속성을 가지지만, 상전가와 관계없는 향촌에서의 일상적인 삶은 부농 또는 소지주적 기반의 자력가로서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1722년 안동부 전답 소송

1) 이전 소송과 不應訟

본 소송의 원고는 안동 서후면에 거주하는 유학 김복령(28세), 쳇은 장일경

32) 1707년 구례현 결송입안, 97-99행.

(58세)이다. 소송의 쟁점은 量名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두고 노주와 노비 후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³³⁾ 본 소송의 쟁점과 변론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³⁴⁾ 다만 노주 소송의 측면에서 보이는 소송 절차의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소송의 소쟁물은 안동부 내에 소재한 전답 1결 30복 4속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유학 김복령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김씨가에 세전하는 전답인데 前年에 양전할 때에 親見하지 못한 결과 경작자들의 농간으로 양안에 경작자의 이름으로 懸主되었으니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다.³⁵⁾ 그런데 시송 다짐 후 試卞 과정에서 김복령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소송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저의 6, 7대 동안 전래된 전답 1결 30여복은 故奴 太任의 손자로 안동부내에 살고 있는 一京이 己上이라고 칭하면서 전임관 재임시에 소지를 올려 저를 무고하여 推捉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중병을 얻어 생사를 헤매던 중이었으므로 就訟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제가 거짓으로 병을 칭탁해 근거없이 거역한다고 의심하여, 제 노비가 잡혀가 끝내 枕斃하기에 이르렀는데 저는 병세가 위극하여 송정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改量할 때에 일경 등이 제 전답 1결 30여복을 모두 그들 이름으로 바꾸어 懸主하였습니다.³⁶⁾

이를 보면, 소쟁 전답에 대한 소송은 장일경축에서 먼저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김복령가의 노비 太壬의 손자로 속량되어 안동부내에 거주하는 인물이었다. 노비의 후손이 옛 상전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복령은 송정에 나가지 않았고, 소유 노비가 대신 잡혀가 형장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당시에 중병을 얻어 위독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직접 송정에 나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장일경축이 승소하였던 것으로 파악

33) 본 소송의 결송입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고문서집성 6: 의성김씨 천상각파편 Ⅱ』, 증빙류, 입안 17, 32-48면 참조[한국학진흥사업단 토대연구지원사업, 2018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2차년도 연차보고 자료집),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1225-1336면]. 이하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으로 칭함.

34) 심희기, 1996 「18세기 초 안동부 전답결송입안의 법제적 분석」 『고문서연구』 9·10 참조.

35)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3-21행.

36)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26-34행.

된다.³⁷⁾

김복렴과 장일경은 양반과 속량된 평민으로 이른바 ‘신분의 격차’가 현격할 뿐만 아니라 옛 상전가와 노비 후손이라는 노-주 관계에 있었다. 이는 하층 신분이면서 노비 후손이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서 법적 활동을 통해 상층 신분이며 옛 상전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실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상층 신분이며 옛상전자인 김복렴은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여 落訟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양측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였을 뿐 그 사이에는 신분의 격차 또는 노-주 관계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장일경은 득송을 명분으로 1720년 경자양전 시에 해당 전답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고쳐서 懸主하였다. 그 후 김복렴은 장일경에게 득결입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고금천하에 어찌 상대없이 獨訟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官庭에 들어간 적이 한번도 없으며, 대대로 전해오는 문기가 분명하게 있으나 推納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경 등이 단독으로 決案을 받은 것은 과연 그러한 訟體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주장하였다.³⁸⁾ 자신이 應訟하지 않았는데 獨訟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명분이었다.

소송 시기의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선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진술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병에 걸려 오랫동안 몸을 치료하느라 전임관이 재임할 때 訴冤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임 성주께서 교체되어 돌아간 후에 다행히 기운을 차려 비로소 (관찰사께) 의송을 올려 영천 겸관에 接訟하였습니다. 隻漢들이 시송 이후에 스스로 이치가 없음을 알고 도피하여 겸관 송정에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 推捉하던 때에 (안동) 성주께서 부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천에서 본 안동부로 推訟하므로 案前(안동부사)에 의송을 來付하여 이미 시작된 소송을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예김 내에 ‘겸관에게 시송한 것을 이제 논할 수 없으니, 가을을 기다려 다시 정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檢量하는 날을 맞아 만약 還錄하지 않으면 장차 영구히 蔊게 되므로

37) 당시 소송에서 장일경이 김복렴의 노 喜周와 한 곳에서 推閱하여 決給받았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김복렴 측은 노비가 代訟한 것으로 파악된다(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137-141행).

38)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39-43행.

다시 의송을 올리니 (관찰사께서) ‘이미 접송하였으면 속히 처결하라’고 처분을 내려 주셔서 이를 점령하여 우러러 호소합니다.³⁹⁾

이를 보면, 안동부사가 교체되는 시기에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 영천 겸관에 接訟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사이 신임 안동부사가 부임하자 영천에서 안동부로 소송을 이관할 것을 시도하여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다시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 접송된 소송이면 속히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아 안동부에 接訟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전 소송을 판결한 소송관이 재임 중일 때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여 전략적으로 소송관이 교체되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⁰⁾

소송의 시작은 1721년(신축) 4월 26일 원고와 척이 함께 송정에서 始訟傍音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⁴¹⁾ 訟卞 과정에서는 원고와 척의 推問 진술과 更推 진술이 진행되었다. 원고와 척은 각 필지별로 소쟁 전답의 根因을 진술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박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복렴은 자신이 병든 것을 이용하여 장일경이 위조문서를 만들어 誣訴하였고, 관에서는 자신이 소송에 불출석한 것에 노하여 문권을 살펴보지도 않고 장일경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임 소송관의 판결이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때 자신이 문권을 가지고 卞白 즉 변론하였다며 폐소할 이치가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⁴²⁾

이에 대하여 척 장일경은 전임관 때의 得訟과 法外記上을 강조하였다. 그의 조부 태임과 태수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상전택에 사환되다가 사망할 때에는 자식이 있는데도 허다한 전답, 노비 및 가사를 記上으로 칭하며 모두 횡탈당하였는데, 노비와 상전의 分義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원통함을 품고 사망하

39)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46-58행.

40) 신임 지방관이 부임하기를 기다려서 정소 활동을 전개하는 사례는 현전하는 소지 문서들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담양 유희춘 후손가에서 투장묘를 파내기 위해 전개한 정소 활동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김경숙, 2017 「19세기 향촌사대부가의 山訟 실태와 滯訟」『역사학연구』 66 참조).

41)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21-25행.

42)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114-123행.

였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소송에서 김생원의 노자 喜周와 한 곳에서 推閱한 결과, 소송관이 ‘이미 朝家의 記上之法이 혁파된 후에 법을 어기고 기상을 假稱하여 횡탈한 것은 매우 근거없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決給하였음을 주장하였다.⁴³⁾

양측에서는 1721년 12월 21일에 각각 可考文書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推問 진술을 두 차례씩 진행하였다. 송변이 모두 끝난 후 원고와 척은 1722년(임인) 2월 4일에 未盡之端이 없으므로 결승을 요청하는 결승다짐을 하고, 소송관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약 10개월 만에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소송관은 원고의 가고문서가 모두 근거 있는 문적이며, 또한 김씨가에서 해당 전답을 執持한 지 오래되어 대한(60년) 소한(30년)의 정송기한이 모두 지났음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소쟁답을 원고에게 결급하였다. 다만 西邑에 있는 珠字番은 기상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매매한 것처럼 문기를 작성하였으나 감추기 어렵고,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장일경 측에 결급하였다.⁴⁴⁾

이상의 소송 과정을 보면, 원고 김복렴은 이전 소송에서 자신은 송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노비 희주를 통해 代訟하였다가 낙송하였고, 그 후 안동 부사가 교체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상전가라도 소송에서 득송하기 위해서는 가고문서를 갖추고 법리에 근거하여 詛卞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음을 말해준다. 김복렴이 ‘내가 만약 문권을 가지고 변론하였다 면 패소할 이치가 없다’고 한 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⁴⁵⁾ 결국 조선시대 소송 현장에서는 노-주 관계나 신분이 작동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라는 법적 주체로서 대등한 관계였음을 말해준다.

2) 노비 신분과 ‘奴主’

본 소송의 소쟁물은 안동부 내에 소재한 전답 1결 30부 4속이었다. 이 전답들은 경자양전에서 장일경 등의 경작자 名字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전의 갑술양안

43)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127-141행.

44)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574-593행.

45)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122-123행.

에는 김복령가의 노비 명자로 懸主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東後面의 廣字田 20부 3속, 南邑의 成字田 13부 6속, 經字畠 23부 2속 등 총 57부 1속은 奴 參卜 명의로 등재되었고, 남읍의 左字田 14부 7속, 西邑의 潛字畠 15부 8속, 芥字畠 14부 7속, 海字畠 16부 8속, 珠字畠 11부 3속 등 총 73부 3속은 奴 大文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노 대문 명의로 등재된 전답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주목된다. 즉 노주 김씨가에서는 노 대문이 김씨가 소유 노비라고 주장하였던 반면, 노비측인 장일경은 자신의 5대조인 김씨가 노비 從卜의 소유 노비명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일경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갑술양안에 대문의 이름으로 전답을 현록한 것을 (김복령은) 그의 노 대문 이름이라고 하는데, 대문은 곧 우리 선조가 매득한 노자입니다. 관가의 장적을 보면 빙고 할 수 있고 또한 엽질안을 보면 대문의 이름이 우리 선조의 노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鄉外愚氓이 상전의 위세에 겁먹어 그가 가지고 있던 전답을 노자 대문의 이름으로 현주하였습니다. 위의 김생원이 우리 선조 및 대문의 이름으로 현주된 전답을 그의 노 대문의 이름이라고 구실삼아 이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公庭을 분운하게 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⁴⁶⁾

노비측에서는 노 대문이 자신의 선조대에 매득한 노비이며, 소유 전답을 상전의 위세에 겁먹어 소유 노비인 대문의 이름으로 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씨가에서 노 대문을 김씨가의 노비 이름이라고 구실 삼아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노비측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관은 노주 김씨가에도 노 대문이 노비측 노비인지 노주측 노비인지를 확인하는 심문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씨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이른바 대문은 일경의 5대조 從卜의 노비입니다. 종복은 저희 집의 예전 노비인데 府內의 거부입니다. 수많은 전답을 모두 그의 노비 대문의 명의로 양안에 올렸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左字田·芥字畠·海字畠·珠字畠 등 4곳도 역시 대문 이름으로

46)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149-158행.

타량한 것입니다. (중략) 종복이 그의 많은 자녀들에게 모두 대문의 명의로 타량된 전답을 분급하였습니다. 종복의 장자 石只라는 자는 일경의 고조부가 됩니다. 종복의 차자는 三山이라는 자인데 역시 일경의 종고조부가 됩니다. 종복의 자녀는 모두 저희 집안의 노비입니다. 자손있는 노비는 원래 記上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경의 고조부인 석지와 그 同生들의 허다한 전답을 한 곳도 거두어 가질 수 없었습니다.⁴⁷⁾

이를 보면, 노주측에서도 노 대문이 노비측 소유 노비임을 인정하고 있다. 애초에 김씨가 소유의 노비라고 주장한 데서 입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노 대문은 김씨가 노비 從卜의 소유 노비임을 원고와 척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갑술양안이 작성된 1634년 전후에 살았던 장일경의 5대조 노 從卜은 안동에 거주한 의성김씨가 소유 노비였다. 그는 부내에 거주하는 巨富로 허다한 전답과 노비 대문을 소유하였는데, 갑술양안 당시 자신의 전답을 노비 대문의 이름으로 양안에 현주하였다. 이후 5대손인 장일경에 이르기까지 이 노비 집안은 5대에 걸쳐 부내에 세거하면서 재력가로서의 경제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여기에서 노 종복은 신분적으로는 김씨가에 예속된 노비 신분이었으나, 부내에서는 노 대문을 소유한 ‘노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노주로서의 노비는 신분적 존재인 노비를 소유한 노비 신분이라는 점에서 田主로서 ‘소지주’적 경제력을 보유한 노비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 장에서 검토한 노 정응청 또한 ‘상속 받은 田民이 많아’라는 표현으로 볼 때,⁴⁸⁾ 단순히 많은 전답만 소유했던 데서 그치지 않고 노비 또한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법제적으로 노비는 노비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노비들도 매매를 통해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 종복과 노 정응청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47) 1722년 안동부 결급입안, 200-211행.

48) 1707년 구례현 결급입안, 98-99행.

4. 맷음말: 노비, 신분, 그리고 조선사회

이상에서 기상 전답의 소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송 현장의 특성과 노비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검토하였다.

소송 현장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소송관의 결송 근거를 통해 소송의 진행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가고문서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소송관의 판결 또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한 가고문서의 진정성 및 법전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김복령은 옛 상전가였으나 가고문서를 갖추어 직접 應訟하지 못한 결과 노비 후손에게 落訟하였고, 이에 대해 자신이 문서를 가지고 변론했다면 낙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주목 되는 현상이다.

이는 국가와 개인이 만나는 공적인 공간, 즉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립 경쟁하는 송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원고와 척이라는 대등한 법적 주체로서 대결하였음을 의미한다. 신분의 격차가 있는 소송 당사자들이라도 송정에서는 원고와 척의 관계였으며 그 사이에 신분적 차별이 작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이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또한 소송 문서 속에서 확인되는 노비의 삶은 기존에 알려진 노비 신분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정응청(?~1653)과 종복(1634년 전후 생존)은 17세기 초중반에 전라도 구례와 경상도 안동에서 각각 삶을 영위하였던 노비들이다. 정응청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용인 사는 윤생원가의 노비였고, 종복은 같은 지역인 안동에 사는 김복령가의 소유 노비였다. 이들은 거주 지역과 노주와의 지리적 거리가 현격하게 달랐으나, 처한 상황은 상당한 공통점을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선조로부터의 상속과 매득을 통하여 상당량의 전답을 소유함으로써 면내에서 상층 부농 또는 '소지주'의 경제력을 갖추었고, 또한 노비를 소유한 奴主로서의 사회적 지위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일상 삶의 공간에서 巨富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들은 노비들 중에서도 최상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보유한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상전과의 관계에서는 노비 신분으로서 예속적인 신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상전과의 관계를 벗어나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는 노비 신분으로서의 존재보다는 ‘요부거생’하는 거부로 존재하였고, 더욱이 노비를 소유함으로써 중충적인 노·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전과의 관계 외의 일상의 공간에서 그들에게 신분은 어떤 의미였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였을까?

그동안 노비의 경제력을 논할 때는 노비의 신분 상승과 연관지어 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요부거생하다가 노비 신분으로 사망한 이들 사례를 볼 때, 신분 상승과는 별개로 노비 신분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시적으로 작동했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조선사회에서 신분제가 전 생활 영역에 걸쳐서 관철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일지도 모른다. 특히 사적인 공간이 아닌 국가와 개인이 만나는 접점에서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장에서 신분제 대신 법리와 증거문서에 근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 또한 노비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함께 신분제 작동의 제한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주제어 : 決訟立案, 訴訟, 訟庭, 奴婢, 身分, 日常

투고일(2018. 8. 29), 심사시작일(2018. 8. 29), 심사완료일(2018. 9. 11)

〈Abstract〉

Litigation Court and Nobi(奴婢)'s lives in Chosōn Dynasty's
Kyōlsong iban(決訟立案)

Kim Kyeong sook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ality of the caste system in the Chosōn dynasty period by examining two litigation cases at Kyurye Hyōn(1707) and Andong Pu(1722).

The litigations processes were centered upon the (counter-)arguments made by plaintiffs and defendants, and the documentary evidences they produced respectively. Also, the officials in the charge of the lawsuits did their juridical judgements based upon the claims of those concerned and their evidential documents. For an example, Kim Pokryōm, the plaintiff of the litigation at Andong Pu lost in the lawsuit filed by his nobi's descendant because he neither presented himself at the court of lawsuit nor submitted to the court evidential documents supporting his arguments as he recountered. This example shows us that in the official court where private individuals legally struggled for their interests, the caste system did not work even if they differed from each other in their caste. It suggests to us that there was a space and time in which caste system did not work in the Chosōn dynasty period. That is, it was not that the caste system always worked at any time and at any place contrary to our usual imaginations of the caste system in the Chosōn dynasty period.

Also, Kyōlsong iban exposes to our sight Nobi's real lives greatly different from our established images. Chōng Ūng-chōng(?-1653) and Chongbok(circa 1634) were nobis who lived their lives at Kurye, Chōlla province and Andong, Kyōngsang province respectively in the early and mid 17th century. They, inheriting farmland from their ancestors and purchasing land from others, attained economically the rank of small landlord and socially of nobi owners. Even though they remained subordinate to their individual owners in terms of their caste as nobis, they, based upon their own riche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ther socio-economic potentials, lived their affluent ordinary lives in other fields than in their relations with their owners.

Then, the question arises to what extent the caste system and their caste as nobis wielded its power upon their other ordinary lives than their lives with their individual owners. The established literature concerned tend to explain nobi's economic riches in terms of their rise of social status brought about again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issolution of rigid caste system as was argued to be in the late of Chosön dynasty. Given this, Chǒng Ŭng-chǒng's and Chongbok's lives draw our attention in that they lived their wealthy lives in the middle of Chosön dynasty not in the late of the dynasty. Their lives together with the litigations examined in the above put our established history writing on the caste system of Chosön dynasty into the question: Did the caste system wield its overall power upon all aspects of all the individuals' lives in the Chosön dynasty period?

Key Words : Kyōlsong iban(決訟立案), litigation, court, nobi(奴婢), caste, ordinary life